

의안 번호	2068	【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경과

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4. 7.(금) 이명녀 의원 외 8명

나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7.(금)

다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6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, 관리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보조금의 신청, 변경·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 ~ 제7조)
-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 ~ 제9조)
-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(보조 또는 용자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, 공공기관, 학교,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임.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주차장법」

- 제21조(보조 또는 용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